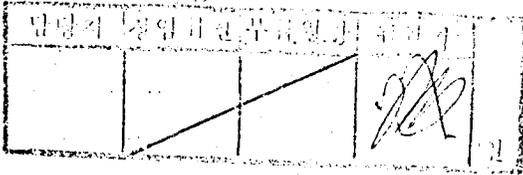


제 726 호
1979. 8. 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김인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훈 령

- 제 508 호 : 서울특별시동도급경비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장..... 3
- 제 509 호 : 서울특별시민영주택사업계획심의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 3
- 제 510 호 : 서울특별시미아가출인습득및분실물처리규정..... 4

◎ 교 시

- 제 348 호 :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지적 승인..... 15
- 제 350 호 : 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 승인..... 15
- 제 35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16
- 제 35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도로) 시행허가일부변경정정..... 17
- 제 35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 승인..... 20
- 제 354 호 : 도시계획사업 (공공의청사) 시행허가..... 20
- 제 355 호 :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21
- 제 356 호 :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및 지적 승인..... 21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5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 변경.....	22
제 358 호 :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변경결정및지적승인.....	22
제 359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및지적승인.....	23
제 360 호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및지적승인.....	23
제 361 호 : 1979년도제 1 회서울특별시새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4
제 362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25

◎ 공 고

제 262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완료공고.....	25
제 263 호 : 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계획및관리처분계획공람 공고.....	26
제 265 호 : 제 2 종전기공사면허실효공고.....	26
제 26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7
제 267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29
제 26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29
제 269 호 : 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계획및관리처분계획.....	32
제 272 호 : 제 2 종전기공사면허실효공고.....	32
제 277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33
제 510 호 (도봉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33

◎ 예 규

제 386 호 : 서울특별시파출소경관기본대장정리규정.....	35
제 387 호 : 서울특별시비상소집실시규정개정.....	38

훈 령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79.8.9.

◎ 서울특별시훈령제 508 호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도급경비 배정통제) 구청장 또는 구분임지출원은 지급된 도급경비를 타목적으로의 유용 또는 편중 예산의 집행으로 사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어도 년 1 회 이상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민영주택 사업계획심의회 운영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8.9.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 서울특별시훈령제 509 호

서울특별시민영주택사업계획심의회 운영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민영주택 사업계획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택행정과장, 도시계획 1 과장, 도시계획 2 과장, 구획정리과장, 녹지과장, 급수과장, 비상계획보좌관, 농축과장이 된다.

제 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담당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미아가출인습득 및 분실물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8.10.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 서울특별시훈령제 510 호

서울특별시미아가출인습득및
분실물처리규정

서울특별시 미아 가출인 습득 및
분실물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한다.

제 1 조 (목 지) 이 규정은 미아, 가
출인, 습득 또는 분실물을 신속정
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배대상) 이 규정에 의하
여 수배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로부터 무단히 이탈하여 행방불
명된 자 (이하 '가출인'이라한다)
2. 지리를 모르고 길을 잃은 아
이 (이하 '미아'라한다)
3. 습득 또는 분실물

제 3 조 (신고의 수리) ① 미아, 가
출인, 습득 및 분실물 발생신고의
수리는 발생지 경찰서 (파출소포함)
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기타 사정으로 타관할 경찰
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② 타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 4 조 (미아, 가출인 처리절차) 미아
가출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 파출소 업무 처리 절차

가. 신고를 수리한 때는 수리즉시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거 필요
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통으로
경찰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미아 또는 가출인을 보호하고
있을 때는 보호보고하고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여도 보호자가 나
타나지 않을 때는 경찰서에 동
행 보고한다.

다. 가출인 발생신고를 수리하였을
때는 귀가 여부를 매일 4 회
이상 전화 또는 현지 확인하여
귀가하였을 때는 수배대장을 정
리하고 경찰서에 해제 보고 하
여야 한다.

라. 수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
수배할 때는 현지 확인 결과를
매번 수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
다.

마. 경찰서에서 발견하여 해제통보
를 받았을 때는 동 대장을 정
리하고 신고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찰서 업무처리절차

가. 수배보고에 의거 미아 가출인
대장에 등재후 발생일시부터 현
제까지 유치장 입감형사, 보안
보호실 '입감 보호기관에의 보호
의뢰 여부를 확인하여 제 1 차
조치란에 확인결과를 기록 날인한다.

나. 확인결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경찰국에 전통 또는 T.T 로 보고하고 수리익일 보안과에서 전 '가' 목에 의거 다시 확인 대조하고 동 사실을 2 차 조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확인 대조결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파출소에 하달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보호 24 시간이 경과하여 보호기관에 인계한 때는 보호기관 인계란에 동 사실을 주서로 기입하여야 한다.

마. 야간 수배업무 처리는 상황실 근무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3. 경찰국 업무처리 절차

가. 경찰서로 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미아, 가출인 수배대장을 정리한 후 전통 또는 T.T로 각 경찰서에 수배하여야 한다.

나. 미아, 가출인 수배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발견되지 아니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하명 등 처리 내용을 수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 경찰서로부터 수배 해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수배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야간 수배업무는 상황실 근무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리경찰서 업무처리 절차

가. 수배대장을 정리한후 발생일시 부터 현재까지 유치장 입감형사 보안 보호실 입감 또는 보호기관에 보호 의뢰 여부를 대조한 후 1차 조치란에 확인 결과를 기록 날인한다.

나. 확인결과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국에 보고하고 수배경찰서에 통보한후 동 사실을 수배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다.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수리익일 보안과에서 전 '가' 목에 의거 다시 확인 대조하고 동 사실을 2차 조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수배해제 통보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동 사유를 수배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야간 수배업무는 상황실 근무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습득 및 분실물 처리) 습득물 또는 분실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요령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파출소 업무처리 절차

가. 수리즉시 근무일지에 기록한후 경찰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서 업무처리 절차

가. 보고 또는 신고 수리즉시 습득물 또는 분실물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나. 등재후 기히 수배된 여부를 확인대조후 1차 처리란에 동 사유를 기록하고 발견하지 못한 때는 경찰국에 전통 또는 T.T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견하였을 때는 직접 또는 파출소에 하달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미 발견분에 대하여는 수리익일 보안과에서 다시 확인대조후 동내용을 2차 처리란에 기록하여야 하며 발견시는 진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 경찰국 업무처리 절차

가. 경찰서로부터 습득물 또는 분실물 수배보고를 받은 때는 습득물 또는 분실물 처리대장을 정리한후 전통 또는 T.T로 경찰서에 수배하여야 한다.

나. 경찰서로부터 수배해제 보고를 받았을 때는 동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다. 야간 수배업무처리는 상황실 근무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리 경찰서 업무처리 절차

가. 대장을 정리하고 기히 수배된 여부를 확인 대조한후 1차 처리란에 동사유를 기록하고 발견시는 경찰국 및 수배경찰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미 발견분에 대하여는 익일

보안과에서 다시 기록하여야 하며 발견시는 진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사활동) ① 발생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1. 신고내용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될 때
- 2. 수배후 5일이 경과하여도 발견되지 아니한 때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보안과장이 서식 제 4호의 미야 가출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수사과에 수사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배불능대상) 경찰서장은 요수배자의 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채권 채무로 인한 민사사건에 관련된 자의 수배
- 2.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형사판계 수배
- 3. 수배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행방이 막힌 자의 수배

제 8 조 (수배해제) ① 원 수배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배 해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보호자로 부터 수배자가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때

2. 발견보호 수배로 수배자의 발견이 확인되었을 때

3. 기타 수배자의 발견이 확인된때

②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수배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수배가 해제된다. 다만, 재수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배부에 재수배표시(년 월 일)을 하고 재수배 처리하여야 한다.

③이때 수배는 경찰국을 통하여 타 시도까지 전국 수배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미발견의 처리) ①미 발견자로서 자동적으로 수배 해제된자에 대하여는 미아 가출인표(제 5 호서식)를 작성하여 경찰국 감식계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아 가출인표는 원수배지 경찰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이송일자를 미아 가출인 수배부의 소정란에 주서로 기입한다.

제 10 조 (미아 가출인표의 보존년한)

①미아표의 보존년한은 작성한 날로부터 10년, 가출인표는 3년으로 한다.

②전항에 의한 보존년한이 경과하였을때는 이를 폐기 처분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보존할 수 있다.

③미아 및 가출인표와 변사자 수배카-드를 대조하여 미아 또는 가출인과 상위없다고 확인되었을 때는 별지제 4 호 서식에 대조확인사항을 기재하여 원수배지 경찰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개수배) 경찰서장은 보호자로부터 공개수배를 요청받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사, 방송국, 기타 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공개수배를 실시한다.

제 12 조 (업무협조) ①수배에 있어 미아보호소, 아동보호소, 경쟁원 기타 수용시설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수용시설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미아 가출인 수배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경찰서장을 경유하지 않고 보호 조치된자에 대하여는 수사등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별지제 6 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 수배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배대장비치) ①파출소에 별지양식 제 1 호서식의 미아가출인 수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경찰국 및 경찰서에 별지 제 2 호서식의 미아가출인 수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경찰국 및 경찰서에 별지제 3 호서식의 습득을 처리대장 및 분실물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미아가출인 수배신고 및 보호신고의 습득분실물 신고를 수리하였을때에는 동대장에 등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식제 5 호>

미 아 · 가 출 인 조 사 표

기 호 번 호

미 아 가 출 인	성		년		성	남·여	직 업 관 계		본 적 및 주 소	
보 호 자	명		령		별	남·여				
사		항		내		용				
발 생	일	시							사 진	
	장	소								
	동	행	유	무						
	동	기								
	목	격		자						
인 적 사 향	정	신		상		태				
	신	체		상		태				
	인상·착의·특징									
	금 품 등 소 지									
가 족 사 향	가	족		사		향				
	생	활		상		태				
	가	정		사		정				
유 피 여 부	보 호 자 의 건									
	신 고 자 성 명									
신 고 자		성 명		년 령		관 계				
조 사 자		소 속		계 급		성 명				

<서식제 6호>

미 아 및 가 출 인 표 (경찰국)

인 상 특 징	신 장		인 적 사 항 등	본 적	
	체 격			주 소	
	면 형			발생년월일	
	두 발			발생장소	
	풍 체			성 명	
	특 징			년 령	
	치 아			직 업	
	착 의			동 기	
	소 지 품			배 회 선	
	정신상태			가정사정	
	신체상태			수 배 처	
	건강상태			작성일자	
기 타		작성관서			

(이 면)

대

조

안면상 (사진)		대조확인자수배	
범죄자확인여부		기 타 사 항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48 호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지 적 승 인

1. 건설부고시 제 232 호 ('79.6.27)
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서울도
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을 도시계획

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
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8.2

서울특별시장

○ 고속철도 (부대시설) 지적승인 조서

명 칭	위 치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기 지정 차장	동대문구용담동 246-1 일대	17	170	3,160	기 지정 차장 면적에 따른 축소
신 지정 차장	동대문구용담동 128-3 일대	20	170	3,400	
차 고	답십리군자, 송정, 사근 동 일대			176,840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0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
리처분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
여 서울시공고 제 138 호 ('79.4.
26) 로 공람한바 있는 한남 1 구역

및 진농 1 구역에 대하여 의견서
심사후 일부 계획변경하고

2.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와 건축법 제 33 조의
2 와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 계
획인가 및 전출계획을 승인
한다.

<p>3. 고시내용</p> <p>가. 관리처분 계획 : 서울시청 주택 개량과와 관할구청 시민홀 및</p> <p>나. 건축계획</p> <p>1) 건축물의 규모</p>	<p>주택과에 관계도서를 비치 열람하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보함.</p>
---	---

구 분	층수	건축면적 (가구당)	전 폐 율	용 적 율	비 고
단독주택	2 층	50 ㎡이상	50 %이하	200 %이하	단독지정지에 한함 (존치제외)
공동주택	2 층	"	45 "	150 "	2 가구 이하 지정지에 한함.
공동주택	3 층	"	35 "	"	단, 100 명이상 단독필지는 연립주택기준에 한함.

<p>2) 건축물의 높이</p> <p>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 규모의 층수로 하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한다.</p> <p>3) 건축물의 모양</p> <p>건축물의 명반은 구역전체 경관조성에 적합한 형으로 하며 지붕은 박공 및 모임형으로 하여야 함.</p> <p>4) 건축방법</p> <p>주민 자력에 의하여 당시 지정 업체로 하여금 건축함.</p> <p>5) 건축기간 및 합의기간</p> <p>건축기간 : 79.8.1 ~ 80.3.30 (단, 합의는 79.9.30 까지)</p> <p>6) 기타 사항은 동구역 건축</p>	<p>계획승인서와 건축법 및 관계법령 준용함.</p> <p style="text-align: right;">1979.8.4</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작</p> <p>◎서울특별시고시제 35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시고시 제 387 호 ('78.8.3) 로 결정된바 있는 당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에게 보인다.

1979.8.4

서울특별시장

○ 도로 지적승인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대로	3	30	25	3,250	성산동	수색동	천구간지적승인
"	3	34	25	8,750	연희동	경기도신도면	4,990지적 승인
"	3	38	25	6,750	수유동	상계동	4,370지적 승인
"	3	42	25	8,750	면목동	경기도자지리	5,240지적 승인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도로)
시행허가일부변경정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98 호 ('79.7.4)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도로) 에 대하여 지적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지번 및 지적의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천호 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 봉사실과 천호학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8.4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사동 362 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도로)

천호상업고등학교

3. 사업시행차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일동 296-4

학교법인 천호학원 이사장 박승규

4.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 = 33,058 평방미터 (10,000 평)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토지 소유권 확보후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 개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생략)

8. 공사설계도면 : (생략)

○ 당초 사용할 토지 내역 및 소유권 명세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강남구 압사동	362	전	883 평중 (777.12평)	중구신당동 353-34	장연숙	강남구청담동 220-2	윤도환에 가 등기
"	363	답	2,100 평중 (2,100평)	중구 장충동1 가 48-24	김종이		
"	364	전	219 평중 (219평)	중구신당동 353-34	장연숙	강남구청담동 220-2	윤도환에 가 등기
"	365	"	366 평중 (22.23 평)	종로부암동 158	안정경 외 3 인	재산상속인 3 인 종로, 부암 158	조한응에 근저당
"	366	답	1,387 평중 (440.03 평)	강남구압사동 444	김영신		
"	367	전	225 평중 (20.12 평)	강남구신사 1 동 424-16	김정찬		
"	산 42-3	입야	4,170 평중 (1,312.85 평)	중구신당동 353-34	장택식	도봉구도봉동 282-6	김봉환에 장택식지분 및
			공유지분평수	"	전옥이	전옥이 지분	가 등기
"	산 42-4	"	5,490 평중 (1,418.12 평)	"	장택식	성북정능동 113-32	
			공유지분평수	계 주시용담 1 동 255-7	안순선	정정국에 장택식지분 및	안순선지분을 가 등기
"	산 42-5	"	8,310 평중 (1,985.91 평)	중구신당동 353-34	장택식	강남구청담동 220-2	
			공유지분평수	도봉구도봉동 282-6	김봉환	윤도환에 장택식지분	
			공유지분평수	강남구청담동 220-1	이재득	을 가 등기	
"	산 42-11	"	1,608 평중 (202.98 평)	영등포구목동산 17	김종백 외 4 인		
"	산 42-12	"	1,868 평중 (1,686.44 평)	"	"		
계	11필지	"	26,626 평중 (10,184.81 평)	(허기평수 A = 10,000 평)			

○ 변경정정

사용할 토지 내역 및 소유권 명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지 적	수용 면적	건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남구 압사동	362	전	2,919	800	없음	중구신당동353-34	장연숙	강남구청담동220-2	윤도환
"	362-1	"		135	"	"	"	"	"
"	362-2	"		1,061	"	"	"	"	"
"	362-3	"		98	"	"	"	"	"
"	362-4	"		654	"	"	"	"	"
"	363	답	6,942	6,942	"	중구 장충동1 가 48-28	김중이	없음	
"	364	전	724	652	"	중구신당동353-34	장연숙	강남구청담동220-2	윤도환
"	365-2	"	1,210	38	"	종로구부암동185	안정경 외 3인	조병택, 조병헌, 조성란	
"	366-2	답	4,585	1,441	"	강남구 압사동 424-75	김영신	없음	
"	367-4	전	744	42	"	강남구 압사동 424-16	김정찬	"	
"	산42-24	임야	13,785	4,383	"	중구신당동353-34	장택식	도봉구도봉동282-6	김봉환
"					"	"	전옥이	"	"
"	산42-25	"	18,149	3,823	"	"	장택식	성북구 정릉동 113-32	정징국
"	산42-26	"		598	"	마포구 망월동 398-16	안순선	"	"
"	산42-18	"	27,471	12,393	"	중구신당동353-34	장택식	강남구청담동220-2	윤도환
"						도봉구 도봉동 282-6	김봉환		
"						강남구 청담동 220-2	이재득		
계				33,058					

◎ 서울특별시고시제 353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조서

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8.6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공향국민학교	강서구공향동 4-156외 125필	22,717 (6,872 평)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4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9 호 ('77. 11.25) 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서초동 산 183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시행허가

3) 사업시행자 : 법무부장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나. 준공 예정년월일 : '83.12.31

5)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별첨생략)

6) 공사설계도서 : 별첨 (도면생략)

7) 사업시행규모 : 31,736 ㎡ (9,600 평)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1979.8.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355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인가

- 1. 고시 제 578 호(1978.11.6)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진관내동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9)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은평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 . .

서울특별시장

(다 음)

- 1.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진관내동 14번지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진관내동하수도공사
- 3. 사업의 규모 : 철근콘크리트 압거 (3.5×1.5) L= 36 m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은평출장소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유통업무설비	동대문구답십리동 530-18 일대	52,080	
변 경	"	"	32,510	

준공예정 : 인가일 + 30 일

- 6.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 별첨토지조서참조
 -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 토지조서 생략 (인가조건)
- 별첨 개략설계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356 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에 관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8.7

서울특별시장

○ 지적승인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유통업 무설비	동대문구답십리동 255-9 일대	3,209	

번철 도면참조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5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 2 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8.8

서울특별시장

○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특별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m	200m	상도동 283	상도동 283	폐 지
변경	"	"	"	200	"	"	
기정	"	3	6	37	신당동 658	신당동 481	위 치 변경
변경	"	"	"	37	"	"	
신설	"	2	8	400	명일동산 47	고덕동 262	
"	"	"	"	50	응암동 286	응암동 286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58 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277 호

('78.9.19)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8.8

서울특별시장

○ 시설 조 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유수지	강서구염창동 503 일대	25,763	구획정리사업확보
변경후	"	"	28,810	구거 및 재방부지확보 : 3,047㎡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59 호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수도)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9.8.8

서울특별시 장

○ 시설 조 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수 도	성북구정능동 966-1 (하천부지 일부)	570 (172.4평)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60 호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9.8.9

서울특별시 장

○ 시 선 조 시

기 정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공공공지	관악구사당동 316-30	166(50.2평)	폐 지
"	"	" " 316-40	166(50.2평)	"
변경후	"	" " " 316-192 외 1 필지	360(108.9평)	신설(위치변경)
신 설	"	서대문구홍은동 265-314, 315	495.9(150평)	
"	"	" 홍제동 360-57	165.3(50평)	
"	"	" 북가좌동 91-41	165.3(50평)	
"	"	" " 81-191	165.3(50평)	
"	"	세곡동로타리 부근	41,136(12,443평)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61 호

1979년도제1회서울특별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9년
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

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9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회 계 명	예 산 액
일 반 회 계	398,694,454
국민주택비특별회계	47,116,000
주비재개발특별회계	23,715,000
구획정리비특별회계	22,700,000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3,407,000
유료도로비특별회계	4,661,0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90,000
개해구호비특별회계	716,000
수도사업비특별회계	54,167,000
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회계	85,400,000
병원사업비특별회계	4,392,000

◎서울특별시고시제 232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17 호 ('79.7.12)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8.10
서울특별시장

다 음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영등포구 시흥동 산 84-16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 옥성운수주식회사 부지조성 공사
- 다. 사업시행면적 : 2,778 ㎡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영등포구 시흥동 270-2 옥성운수주식회사 대표 김상문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시행허가일로부터 1주일내
준공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재지	필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흥동 산 84-16	1필지	임야	2,778 ㎡	옥성운수(주) 대표 김상문	여객자동차 정류장용지

사. 토지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서울시영등포구 시흥동 270-2
옥성운수(주) 대표 김상문
아. 도 면 :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62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24 호 ('79.3.23)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도봉구청동 720-2 호의 조흥운수주식회사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동 720-2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조흥운수주식회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174 ㎡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134-39 호 조홍운수주식회사 김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79.6.18 ~ '79.7.31
- 6. 공사완료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263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건축계획및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323 호 ('78.7.4)

3. 공 고 내 역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인가된 용산1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및 제 42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조 및 건축법 제 33조의 2 규정에 따라 동 구역관리처분계획에 부합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공람에 공한다.

2. 관제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다.

지구명	위 치	계획면적	계획수립내역
용산1지구	용산구 1, 5, 11 번지일대	59,044 명	1. 관리처분계획 개별통보 (도면생략) 2. 건축계획서 주택개량과에 비치

1979.8.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65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공고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제 8 호의

사유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취소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9.8.4

서울특별시장

종별	면허번호	업제명	대표자	소재지	면허실효 일 자	사 유
제2종	73	안산전기(주)	김인희	동대문구용두동 234-28	79.7.31	제2종전기공 사업면허대여

◎서울특별시 공고제 26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제 198 호(71.4.7) 로
고시된 방학동-상계동간 도로선
설 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
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을 수립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25 조의 2 의 규정
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
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공고장소 : 도봉구청 게시판

나. 공고기간 : 1979.6.10 -
1979.8.23

1979.8.6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장위치 : 도봉구방학동 304 번지의 1
- 도봉구상계동 567 번지
2. 사업의종류와명칭 : 방학동-상계동간
도로선설공사(도로)
3. 사업의규모 : 가. 폭 = 30 미터
나. 연장 = 1,430 미터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인가일 - 1979.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상계동 853-2	답	522	상계동 996	서학석		
2	" 852-3	하천	700	"	윤광복		
3	" 852-1	답	250	"	"		
4	" 851-1	진	265	도봉동 259	황병준		
5	" 855-27	하천	136	"	윤광복		
6	" 855-54	답	300	중화동 309-74	나익규		
		"		번목동 497-1	홍현용		
7	" 850-1	"	949	도봉동 259	황병준		
8	" 850-3	"	21	"	"		
9	" 816-1	"	513	상계동 471	장태산		
10	" 849-3	"	676	" 1117	김길태		
11	" 848-3	"	1200	몽두동 231-16	염완길		
12	" 847-8	"	831	중화동 22	이한기		
13	" 847-10	진	579	도봉동 394	정경근		
14	" 845-4	"	426	" 434	변길수		
15	" 846	"	432	상계동 1116	윤석순		
16	" 844-6	"	680	미아동 10	김만원		
17	" 843-6	"	1278	화양동 8-06	배종학		
	"	"		교북동 1-28	이윤희		
	"	"		북가좌동 202-375	하한봉		
18	" 843-10	"	77	공능동 382-2	"		
19	" 842-5	"	825	상계동 1013	성명수		
20	" 842-12	"	566	휘경동 269-26	김태산		
21	" 833-20	"	426	상계동 582	이근배		
22	" 833-2	"	500	수유동 119-11	강범대		
23	" 833-14	"	650	석관동 199-4	황화백		
24	" 841-8	"	625	신당동 52-4	이대용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재지		관 계 인	
				주소	설명	주소	설명
25	석계동 041-2	전	333	훈정동 63-42	정익수외 1인		
26	" 040-7	"	932	신문로 2가 49	양병환		
27	" 569-2	"	593	청량리동 206-7	황임래		
28	" 567-6	"	808	포천군가방면 죽리 10	안근호		
29	" 568-2	"	446	마자동 510-3	최광식		
30	" 567-8	"	615	이문동 288-23	양병환		
31	" 567-9	"	62	영흥포구본동 127	김연희		
32	" 566-6	"	525	청량리동 427	최경찬		
				방학동 403	권봉근		

◎서울특별시 공고제 267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도봉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 정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다.

1979.8.

서울특별시자

1. 사업명: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위치: 도봉구도봉동 282-60번지의

79 필지

3. 변경면적: 9,672 평
4. 변경조서: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비치)

◎서울특별시 공고제 26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628 호 (78.11.29) 결정고시 및 서울시고시제 158 호 (79.4.18) 지적승인된 신사국민학교 부지조성공사 구간내에 지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응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함.

3. 관계도서는 은평출장소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람토록 함.

1979.8.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장의위치 : 서대문구신사동 98-4 의 9 필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신사국민학교

다. 사업의규모및면적 : 4,416평
 라.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교육감.

마. 사업의착수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에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즉시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2년
 바.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첨부 토지조서 1부

수용할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학교명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서울신사국민학교	서대문구신사동	98-1	대	164 평	
		-4	잡	10.206 평중, 3,582 평	
		-26	대	124 평중, 100 평	
		-27	"	50 평	
		-28	"	30 평	
		-29	"	103 평중, 133 평	
		-30	구기	387 평중, 34 평	
		산 93-20	분묘	1,110 평중, 172 평	
		도로	도	110 평중, 92 평	
		98-31	대	59 평	
계		10 필지		4,416 평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주소,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서울신사국민학교	시대문구신사동	98-1	대	164 평	신사동 98-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	잡	10,206 평 중 3,582 평	신 장 호 종로구명륜동 2 가 215	
		26	대	124 평 중, 100 평	양 창 갑 북가좌동 100-92	
		27	"	50 평	신 수 호 신사동 98-27	
		28	"	30 평	김 용 순 신사동 98-28	
		29	"	163 평 중, 133 평	이 성 환 신사동 98-1	
		30	구거	387 평 중, 34 평	신 장 호 서울특별시	
		산 93-20	분묘	1,110 평 중, 172 평	연회동 508-37	주식회사력키 (근저당)
도로 98-31	도	110 평 중, 92 평	김 정 의 서울특별시			
		98-31	대	59 평	신사동 98-31	
	계	10필지		4,416 평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학교명	소재지	지번	건물면적(평)	소유자주소	성명
서울신사국민학교	시대문구신사동	98-1	35.51	신사동 98-1	신장 호
		98-27	27.70	신사동 98-27	신수 범
		98-28	16.66	신사동 98-28	이성 환
		98-31	52.30	신사동 98-31	이기 하
	계		132.17 평		

※ 무허가 건물은 제외 되었음.

◎ 서울특별시 공고제 269 호

주택개발을위한 재개발사업
건축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공 략 공 고

1. 서울시고시제 91 호 (77.4.1) 주택
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된 돈암3구역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42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을 수
립하고 주택개발 촉진에 관한 임
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제 33 조
의 2 규정에 따라 동 구역관리처
분 계획에 부합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발과 및
관할구청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
제인에게 열람하고 있다.

3. 공고내역

지구명	위 치	계획면적	계획 수립 내역
돈암3 지구	8,11,82, 산 3 번지 일대 (일부)	5,825평	1. 지번별조서 및 도면생략(개별통보) 2. 건축계획서 (주택개발과 및 관 할구청주택과에 비치)

1979.8.1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272 호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공고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제 5 호의
사유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실효되

었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9.8.11

서울특별시장

종 비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면허실효 일 자	사 유
제 2 종	제 149 호	성 아산업 주식회사	정해영	동대문, 신 설동 76-29	79.8.3	제 2 종전기공 사업면허만남

◎ 서울특별시 공고제 277 호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1. 장안평지구 및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 되었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코자,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보이고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1979. 8.

서울특별시장

환지변경내역

사업명	변경면적	변경위치
장안평지구 잠실지구	29,995.5 평 108,691.1 평	동대문구장안동 88 의 6 외 108 필지 강남구가락동 410 의 14 호외 31 필지

◎ 도봉구공고제 510 호

공인개각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동장직인 및 계인을 개각 사용승인 하였고 동조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9.8.1

도봉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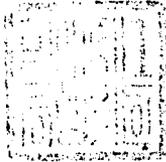
1. 개인 대상동 : 미아제 1 동 . 미아제 6 동 . 성계제 1 동 . 중계동 . 방학동

2. 사용일시 :

1979. 8. 10

3. 개인공인 인영 :

별첨 (공인 개각인영)

공 인 인 영				
구 분	폐 인 인 영 (구)		개 각 인 영 (신)	
	직 인	계 인	직 인	계 인
인 영				
공인명	미아제 1 동장직인	미아제 1 동계인	미아제 1 동장직인	미아제 1 동계인
인 영				
공인명	미아제 6 동장직인	미아제 6 동계인	미아제 6 동장직인	미아제 6 동계인
인 영				
공인명	상계제 1 동장직인	상계제 1 동계인	상계제 1 동장직인	상계제 1 동계인

구 분	폐 인 인 영 (구)		개 각 인 영 (신)	
	직 인	계 인	직 인	계 인
인 영				
공인명	중계 동장직인	중계 동계인	중계 동장직인	중계 동계인
인 영				
공인명	방학 동장직인	방학 동계인	방학 동장직인	방학 동계인

에 규

서울특별시 파출소 경찰기본대장
정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반명한다.

1979년 8월 2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 서울특별시에 규제 386 호

파출소경찰기본대장정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파출소에
비치하는 경찰기본대장의 정리방
법을 규정하여 파출소 업무현황과
관내 개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
록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경찰기본대장비치) 경찰관 파출소에 경찰기본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하 기본대장이라 한다) 기본대장은 관내 변동사항 및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한다.

제 3 조 (경찰기본대장정리) ①기본대장은 파출소장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정리방법은 매일 근무일지에 의거 각종 범죄통계 및 업무통계와 관내 개황 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검열) ①기본대장은 매월말 현재를 익월 3일까지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서 경무과장은 매월 8일 이내에 파출소 기본대장을 검열하고,

별지 제 1 호 서식의 검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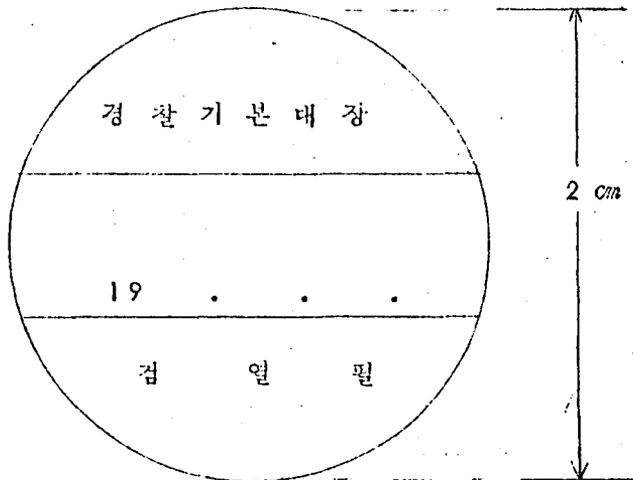
③경찰서 경무과에서 별지 제 2 호 서식의 검열대장을 비치하고 매월 검열결과를 기록하고 정리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재정리 지시하여 3일 이내에 재검열을 하여야 한다.

④기본대장정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정리하지 아니한때, 또는 계속적으로 재검열 지시를 받은 파출소장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9.1 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1 호 서식>



서울특별시 비상소집 실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 . 8 . 2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 서울특별시에 규제 387 호

비상소집실시규정개정

비상소집 실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대간첩 작전 및 치안상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때 이를 신속히 예방진압, 구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전 경찰병력을 긴급소집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방침) 응소거리와 응소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긴급한 상황에 즉응할수 있도록 전력화를 기한다.

제 3 조 (소집종별)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

- 1. 전체소집 : 관할 전 경찰관 소집이 필요할때.
- 2. 지역권소집 : 지역권별 또는 각 경찰서별 소집이 필요할때
- 3. 기능별소집 : 정보·수사·형사등

특수업무 범죄수사등으로 소집 필요시

4. 계급별소집 : 간부·비간부 또는 특정계급만 소집 필요시

제 4 조 (소집본부설치) 비상소집 하령시는 경찰국 및 각 경찰서에 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1. 편성

가. 비상소집관

경찰국은 당직과장 또는 경비 작전과장, 경찰서는 숙직과장 또는 경비과장이 대리할 수 있다.

나. 점검관

소집관이 지정하는 경장·경감 또는 경위 2명

다. 기록관

소집관이 지정하는 경위 또는 경사 2 - 3명

2. 임무

가. 소집관은 응소자에대한 응소규율 점검 및 응소신고를 받고 소집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나. 점검관은 소집관을 보좌하여 소집규율 점검 및 기록원을 감독한다.

다. 기록원은 응소자 명부 및 응소상황을 기록한다.

제 5 조 (숙소계제출등) ①경찰관의 숙소계는 청색지와 백색지 2종으로 하고 청색은 일반전화가 가설되어 있는자, 백색은 전화 없는자가 사용한다.

②신입자와 숙소 및 근무부서 이동한자는 부임 또는 이동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 1호 또는 제 2호 서식의 숙소계 2통을 작성 거주지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1통은 주무과(경비과)에 또 1통은 거주지 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출자 및 퇴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과장은 즉시 그 사유를 주무과장 및 해당 파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무과장 및 해당 파출소장은 당해경찰관의 숙소계를 삭제 정리하여야 한다.

④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경찰관을 자서, 타서, 경찰국, 치안본부 및 기타 경찰기관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의 숙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파출소장은 전 각항에 의한 숙소정리 상황을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경찰서장은 전항에 의거 경찰기관별로 별지 제 3호 서식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집명령) 경찰기관의 장이 비상소집을 명할때에는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소집 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유무선, 싸이렌, 타종, 방송 기타 신속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전달) ①일반전화가가설되어 있는 직원의 소집 전달을 근무부서에서 일반전화로 소집 전달하여야 한다.

②일반전화가 없는 경찰관의 소집 전달은 관할 파출소에서 전달하여야 한다.

③파출소장은 소집 명령이 하달되면 전달체계에 의거 즉시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파출소장은 소집 전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 6호서식의 소집 전달표를 전달소집 및 부분소집등 경찰기관별로 평상시 작성 비치 하였다가 소집 명령이 하달되면 일시, 장소를 기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전달의 호칭은 "전보입니다"로 통일한다.

⑥각 경찰의 기관장은 일반전화 가설된 직원의 전달체제도를 근무부서별로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고 비상소집시는 종합상황실에서 연번 1, 2 번에게

전화 전달하면, 연번 1, 2 번은
전화 전달 받는 즉시 전달체계에 의거
리레이식으로 전화 전달하여야 한다.
⑦직원 전화 번호부는 각 기관별·
근무부서별로 제 8 호 서식에 의거
작성 각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응 소) ①경찰국 경비과장 및
각 경찰서장은 별지 제 9 호 서식의
응소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 명령을 전달 받은자는
즉시 응소하여야 한다.
③응소한 경찰관은 소집판에게 소속
계급·성명을 신고(경찰국 경무과

근무·순경 김막동 응소) 하고
응소자 명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④소집관은 응소자의 복장 및
휴대품을 점검하고 출동 또는
대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⑤근무자는 소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여경은 야간소집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응 소 시 간) 비상소집 하령서
부터 응소까지의 기준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전달소요 시 간	30 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하 령 서 · 대 5 분 ○ . 경찰서 파출소 5 분 ○ . 파출소 전 달 20 분 				
응소소요 시 간	교통편	소요시간	2 km	4 km	6 km	8 km
	있을때 (주간)	50 분	20	30	40	50
	있을때 (야간)	95 분	25	45	70	95

제 10 조 (상황보고) 가 경찰서장은 응
소상황을 별지 제 10 호 비상소집실
시 상황표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1. 제 1 부 - 하령시부터 50 분내
2. 제 2 부 - 하령시부터 80 분내
3. 제 3 부 - 하령시부터 125 분내
4. 제 4 부 - 종합보고 소집완료시

제 11 조 (수송방법) ①야간통금시간
후에 전 경찰관에 대한 비상소집
시는 각 경찰서별로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거 병력 수송용 차량을
배치 한다.

②지역권별 및 기타 개별적인
비상소집은 자서관내에 수송차량
을 배정 병력을 수송하여야
한다.

③통행수단이 있을때의 비상소집
은 각자가 교통수단을 이용 응
소 하여야 한다.

제 12 조 (부대 편성 및 장비 지급) ①경

찰서장은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응소 소요시간의 기준을 사전에 책정하여 시차별 응소 가능 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부대편성은 임시 편성부대로 편제하고 상황에 따라 증감편성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소집권자는 응소자가 보기 쉬운 곳에 무기 탄약 기타 장구의 확대기준 및 지급장소등을 제시하여 신속히 지급 할수 있도록 한다.

제 13 조 (소집훈련) 유사시에 대비 다음기준에 의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 1. 경찰국 전체 훈련은 년 4회 이상
- 2. 경찰서는 월 1회 이상

제 14 조 (교육) 경찰국 경비과장 및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 1. 응소요령
- 2. 비상소집 전달요령 및 병력

수송방법

- 3. 숙소계 제출의 의무와 책임.
- 4. 전달시에 인근 소란 행위금지
- 5. 비상함 설치
- 6. 기타 비상소집에 유의할 규율 및 필요한 사항

제 15 조 (비상함비치) ①경찰국 및 경찰서에 다음 각호의 비품을 갖춘 별지 제 11호규격의 비상함을 충합 상황실에 비치 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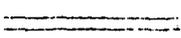
- 1. 자서직원숙소부 (경찰국은 경찰국 직원 숙소부)
- 2. 타서직원숙소부 (경찰국 및 치안본부 포함)
- 3. 비상소집 명령서 및 응소자명부
- 4. 전통용지, 성냥, 양초, 전지
- 5. 차서관내 수송코스 약도
- 6. 기타소집업무에 필요한 비품

②파출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비품과 부책을 갖춘 비상함을 비치 하여야 한다.

- 1. 자서, 타서, 경찰국, 치안본부, 숙소부
- 2. 전달체 계약도, 전달표, 성냥, 양초, 전지
- 3. 기타 필요한 비품

부 칙

이 규정은 1979.9.1 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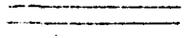
별지 제 1 호 서식			
숙 소 계			
소	속		
직 위 또는 직 명		성 · 명	인
본	적		
주	소		
전 화 번 호		작성년월일	
소 속 국 . 서	국	계 급	성 명 인
경 비 과 확 인	서		
거 주 지 파 출 소 장	서	파 출 소	계 급 성 명 인
확 인			
약 도			
범		하 천	
		천 도	洞
레		도 로	
		연 락 이 용 할 곳	
		동 사 무 소	
		파 출 소	
			학 교
			병 원
			자 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전화 가설되어 있는자가 사용한다. 2. 제출직원은 반드시 거주지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을것 (2 통작성, 1 통은 소속 국 . 서에 제출) 3. 확인파출소는 거주지를 답사후 파출소명 고무인을 날인하고 확인자 성명 기입할것. 			

별지 제 2 호 서식

숙 소 계

소	숙			
직 위 또 는 직 명		성 명		인
본	적			
주	소			
전 화 번 호		작성년월일		
소속국 . 서경비과 확인	국 서	계급	성명	인
거주지 파출소장 확인	서	파출소	계급	성명 인

약 도

범 례		하 천		연락이용할곳	文	학 교
		철 도	洞	동 사 무 소		병 원
		도 로	NP	파 출 소		자 가



1. 제출직원은 반드시 거주지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을것 .
(2 통작성 = 1 통은 소속 국 . 서에 제출)
2. 확인파출소는 거주지를 답사후 파출소명 교무인을 날인하고 확인자
성명 기입할것 .

서식 제 5 호

경비 2040 -

1979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비상소집 명령서

국 . 서 . 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소집을 하명함 .

- 1 . 목적
- 2 . 하명시간
- 3 . 소집범위 (종별)
- 4 . 소집시간
- 5 . 소집장소
- 6 . 복장 및 장비
- 7 . 기타

명령관

경

관

국 (서 . 대) 장

수신처 : 서경 1-22

No. _____		비상소집전달확인증			
전	달	시	간		
전	달	자	자		
피	전	달	자	소속 제	성명
더	전	달	가	속	
수	령	인			

No. _____		비상소집전달표			
전	달	시	간		
응	소	시	간		
응	소	장	소		
부	장,	휴	대		
피	전	달	자	소속 제	성명

190 mm X 134 mm
(신문용지 54g/㎡)

서식 제 8 호

직원 전화 번호부

중부경찰서

“ 수사제 ”

“ 을지로 4 가파출소 ”

부서 별	계급	성명	전화 번호

부서 별	계급	성명	전화 번호
1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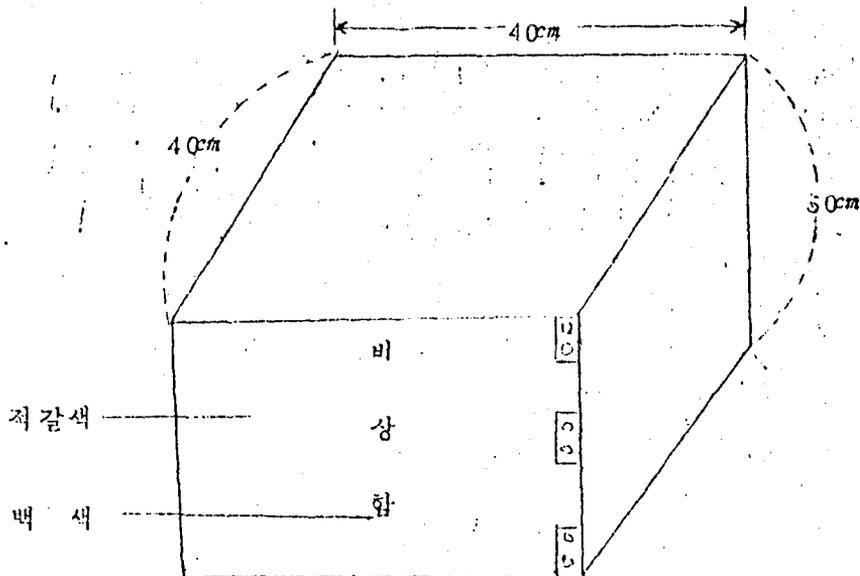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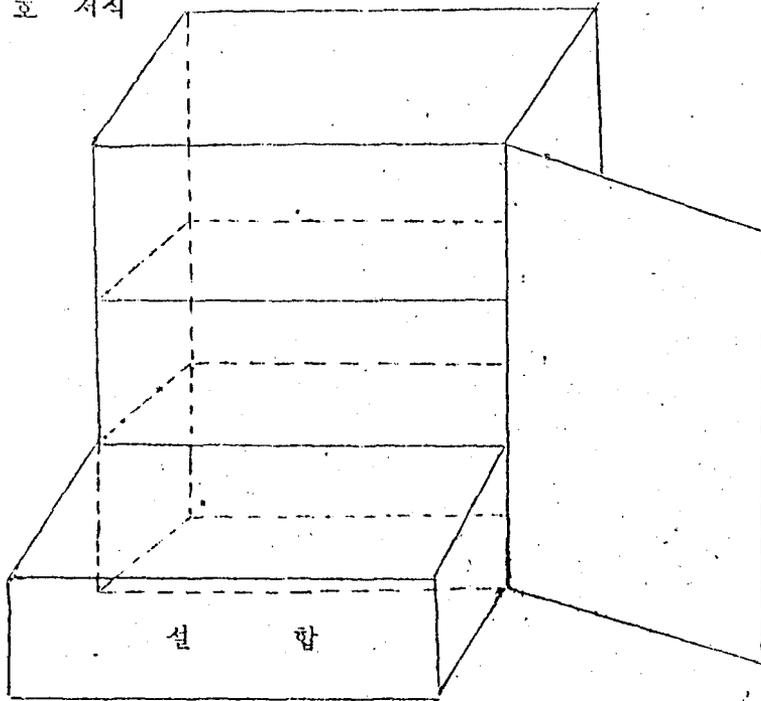
190 mm X 134 mm
(인쇄용지특급 70g/㎡)

5

6

0.5

별지 제 11 호 서식



* 양초, 성냥등은 서랍속에 보관

별지 제 12 호 서식

수송 차량 배치 계획서

서 별	차량 대 수	시 발 - 도 착
청량리서	1	망우공동묘지앞-중량교-청량리-동대문-서대문R
태능서	1	공능파출소앞-동일로-동이로-성동교-성동서-을지로-남대문
"	1	불암파출소앞-동일로-중량교-청량리-동대문-종각-남대문
청량리서	1	면 1 파출소앞-구길-어린이공원후문-구의로타리-성동교-시외버스앞-청량리타리
동부서	1	광장교-구의로타리-성동교-성동서-을지로 6 가-남대문
동부서	1	잠실교-공원후문-천호대로-시외버스터미널-청계천-광교-서대문로타리
강동서	1	마천동파출소-길동-천호대로-청계천-광교-남대문
강동서	1	하일파출소입구-천호로타리-잠실교-구의로타리-성동교-을지로-남대문
북부서	1	우이파출소-수유삼거리-미아리고개-원남동-중앙청-광화문-서대문로타리
북부서	1	도봉유원지입구-수유삼거리-중앙동-안암동-신설동-종각-남대문
성북서	1	미아 2 동삼거리-미아리고개-종 4 가-을 4 가-을입구-남대문-용산서앞
성북서	1	청수장앞-정능교개-돈암동-신설동-왕십리-을 6 가-남대문-용산서앞
종암서	1	석관동 4 거리-월곡동-안암로타리-신설로타리-종각-서대문로타리-마포파출소앞
종암서	1	장위동·월계동경계-미아 3 거리-종암로타리-신설로타리-동대문-을 6 가-을입구-남대문
동대문서	1	전동로타리-신답극장로타리-정계천-시정앞-남대문

서 별	차량수 대	시 발 - 도 착
동대문서	1	돈암동로타리-종4가-을4가-을입구-남대문-제1한강교-노량진역전
중부서	1	성동서로타리-을지로-시청-아현동-마포파출소앞
중부서	1	잠실4거리-구의로타리-성동서앞-을지로-남대문
중로서	1	평창동약-새검정-중앙청-돈화문-종3가-을3가-을입구-남대문
중로서	1	영등순환도로4거리-제3한강교-이태원·삼각지-남영동-남대문-시청-중로서·동대문서
강남서	1	구천파출소앞-잠실-테헤란로-순환도로-사당로타리-남부서앞
	1	잠실4거리-강남서앞-테헤란로-영동시장앞-제3한강교-약수동-울원파출소-을지로-시청앞-남대문
관악서	1	관악구청앞-순환도로-사당동-관악서앞-반포터미널-잠수교-중앙우체국-안국동
관악서	1	잠실네거리-강남서앞-보은사앞-영동교입구-신사동-터미널-반포아파트-관악서앞-남부순환도로-남부서-영등포역전
남부서	1	시흥집문소앞-독산동-남부서-신림동-공사후문-장승백이-노량진-남대문
남부서	1	낙골-남부서앞-독산동-신대방동-대방동-여의도-마포-아현동-시청앞-남대문
영등포서	1	오류역전앞-구로동-영등포역전-노량진-용산-남대문
영등포서	1	오봉파출소앞-구로동-영등포역전-여의도-마포-서대문-종각-남대문
강서서	1	공항입구-강서서-화곡동-화곡파출소앞-통합병원-제2한강교-동교동-신촌로타리-광화문-종각-남대문
강서서	1	신월파출소앞-강서서앞-양화교-영등포시장-노량진-제1한강교-용산-남대문-안국동로타리
마포서	1	고척파출소앞-문래동-영등포역전-제2한강교-신촌로타리

서 별	차 대 량 수	시 발 - 도 착
		-서대문-광화문-남대문
마 포 서	1	상암파출소앞-성산동-서교동-신촌로타리-대흥동-용산서앞-남대문-종각-안국동
용 산 서	1	보광동-이태원-서빙고-동부이촌아파트-서부이촌동-원효로-용산서앞-만리동-서소문-시청앞-을지로 4 가
용 산 서	1	대조파출소앞-은평삼거리-홍제동-서대문로타리-광화문-남대문-서울역-남영동-용산서앞
서 부 서	1	수색역전-응암동-은평삼거리-홍은동-서대문-서울역-용산서앞
서 부 서	1	구파발검문소앞-대조동-은평삼거리-응암삼거리-남가좌동-연희동-신촌로타리-서대문-서울역-남대문
서 대 문 서	1	세검파출소앞-문화촌-홍은동네거리-서대문구청앞-연희동-신촌로타리-서대문-서울역-남대문
서 대 문 서	1	역촌동 3 거리 (예일 학교 앞) - 은평 3 거리 - 무악재 - 서대문로 타리 - 서울역 - 남대문
남 대 문 서	1	망우 파출소앞-청량리-전농로타리-담십리-신담극장앞-청계천-광교-시청앞-남대문-서울역
남 대 문 서	1	수유삼거리-미아삼거리-돈암동-종로 4 가-을 4 가-시청앞-남대문-서울역
노 량 진 서	1	방이파출소앞-잠실-강남서앞-삼능파출소앞-신사동-신반포터미널-반포동-흑석동-남한강-노량진-영등포역전-양화교-강서시
노 량 진 서	1	율원파출소앞-약수동-한남동-이태원-삼각지-북한강-노량진-장승백이-공사후문앞-신림동-남부서앞
성 동 서	1	한남동네거리-옥수동-금호동-성동서앞-을 6 가-시청앞-남대문-서울역
성 동 서		석관동네거리-이문동-농대입구-전농동로타리-신담극장앞-마장동-성동서-을 6 가-시청앞-남대문-서울역